

	<h1>제 규정 관리 규정</h1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2. 4. 2.
		최종개정일자	2018. 1. 18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칙, 규정, 시행세칙을 말한다.

② “규정”이라 함은 대학의 학교 업무처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율하는 대학의 기본적인 성문화된 규범을 말한다.

③ “시행세칙”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한 성문화된 규범을 말한다.

④ <삭제 2014.9.30>

제4조(편성)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본칙 이라함 표시는 별도로 하지 아니 한다.

1. 총칙 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
2. 본칙 :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
3. 부칙 : 시행일자, 경과조치, 기존 제 규정의 관계, 제 규정의 개정 및 폐지 절차, 효력기간 등을 서술

제5조(편제) ① 각종 규정류는 장·절·조·항·호·목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, 그 제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고 조문 수가 많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,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장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, 절에는 장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, 조에는 장·절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
③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
1. 항의 표시 : ①, ②, ③, ④, …
2. 호의 표시: 1., 2., 3., 4., …
3. 목의 표시: 가., 나., 다., 라., …
4. 목이하 단위의 표시: (1), (2), (3), (4), …

④ 부칙 규정은 1, 2, 3, … 으로 표시하되 그 규정이 1개 조일 경우에는 앞의 번호도 생략한다.

제6조(별표 등) 별표, 서식, 보기는 부칙 다음에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시행세칙 등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입안) ①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하되, 반드시 관리부서의 검토를 거쳐 업무 소관부서장이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.

- ②제 규정 성격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 한다.
- ③관리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 소관부서에 제 규정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제 규정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관련부서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.
- ⑤관리부서는 제출된 제 규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
- ⑥업무소관부서는 <별표 1>~<별표 4>서식에 따라 제 규정을 입안 상정 한다.

제8조(관리) ①제 규정의 운용 및 관리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- ②제 규정이 제정 ·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에 규정전문과 신 · 구 조문 대비표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관리부서는 제정 · 개정 또는 폐지된 제 규정을 관리대장<별표 5>서식에 따라 기록하고, 학교홈페이지 규정집에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규정집을 편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- ④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20일 간의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한다.<개정 2018.1.18.>

제9조(효력) ①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

- ②법령, 정관 및 학칙 등 상위규정에 위반되는 제 규정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현행 제 규정이 신 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신 제 규정의 내용을 따른다.

제10조(유권해석) 제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기획처장 유권해석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○○○규정 제 · 개정 상정

1. 심의근거 :
2. 제 · 개정 상정 규정명 :
3. 제 · 개정 사유 :
4. 제 · 개정 내용 : 별첨

위와 같이 ○○○ 규정을 (제정 · 개정 · 폐지)하고자 상정하오니
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상정자 : ○○○부서장 (서명)

<별표 2>

○ ○ 규정 신 .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제 30조의 2(휴학기간)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, 횟수에 제한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<신설></p>	<p>제 30조의 2(휴학기간)</p> <p>①.....<u>다만 병역법상 병역의무기간의 예외로 한다.</u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<p>③ <u>출산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휴학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부 칙</u></p> <p>1.(시행일) 본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별표 3>

상정된 (○○○ 규정 개정(안))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.

※심의 내용 : 원안으로(), 수정 및 제·개정 내용으로()

제 규정 심의위원

심의위원	(인)	심의위원	(인)
심의위원	(인)	심의위원	(인)
심의위원	(인)	심의위원	(인)
심의위원	(인)	심의위원	(인)

※ 본 규정은 심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.

20 년 월 일

제 규정 심의 위원장(총장)

(서명)

<별표 4>

수정 및 제 · 개정 내용

순 번	조 및 항목	수정 및 제 · 개정 내용	비 고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
위와 같이 수정 및 제 · 개정 함.

20 년 월 일

제 규정 심의 위원장(총장)

(서명)

